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과 의의

Indication of Cosmetic Ingredients

정재용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주무관

1. 서론

화장품은 청결과 미용, 피부보호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화학, 생물화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바탕이 된다.

특히 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와 화장습관, 유행에 민감한 패션 상품으로서 심리적 만족감을 성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화장품 및 관련 산업은 1999년 9월 7일자로 “약사법”으로부터 별도 법률로서 분리·제정된 「화장품법」(법률 제06025호)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화장품법」은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정부의 정책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유통·공급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만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 피부보호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작용 등의 발생시 원인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1.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1. 개정취지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만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화장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화장품에 신중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발생시 화

[표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商號 및 價格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1.·2. (생략) 3. 타르색소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그 성분의 명칭</p> <p>4.~9. (생략) ②·③ (생략)</p>	<p>제 10조 (용 기 등 의 기 재 사 항)</p> <p>① _____ _____ _____.</p> <p>1.·2. (현행과 같음) 3.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p> <p>4.~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장품의 용기 등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규정이 전무하였기에 제품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취지는 첫째,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구매 시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지참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개정내용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7.10.17자로 개정·공포되어,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 1년간의 유예(준비)기간을 거쳐 2008.10.18에 전격 시행되며, 이후 출하(수입품은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화장품 성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 배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개별 제품별



[표 2] 외국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현황

구 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표시언어	영어 INCI	영어 INCI	일본어	영어 INCI	영어 INCI	영어 INCI

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 「화장품법」의 개정에 따라 전성분 표시의 예외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 개정시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협의 결과와 화장품 제도개선 T/F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의의

화장품은 청결과 미용, 피부보호 등을 목적으로 인체 및 피부에 직접 접촉·사용하게 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얼굴 등의 미용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 어린이용 로션 및 오일 등이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화장품은 개인마다의 체질이나 피부 등의 특성에 따라 효과 및 적응정도가 다를 것이며, 또한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유아나 아동의 경우에는 성분에 따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분하기 때문에, 화장품 선택과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화장품 성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전은 물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유통·공급함으로써,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에 부합되기 위하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필수적인 것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표 3] 주요 외국사례

구 분	도입시기	기재 예외
미국	1977년	- 제품의 제조공정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제조공정에 따라 처리되는 산(중화되어 염으로 변화) - 공정과정에서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표시성분과 동일한 구성물로 전환되고 구성물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성분
유럽	1997년	- 사용된 원료의 불순물 - 최종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조시 사용되는 보조물질 - 향수나 방향성 조성물의 용제나 캐리어에 쓰이는 규제 필요량만큼 사용하는 물질 (향수 또는 아로마로 언급)
일본	2001년	- 배합성분에 부수하는 성분(불순물포함)으로 제품 중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소량 함유성분 (carry-over 성분)

미국의 경우 1977년, EU 가입국가는 1997년, 일본은 2001년부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장품의 성분명칭은 국제 표준 명칭인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의 안전과 화장품의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앞으로 제조나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되면, 화장품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가 증진되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국내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II. 결론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도입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포장재이나 용기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밀이 노출되는 등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본인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화장품 구매 시 선택에 용이함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부작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을 한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